

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·개선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회관을 관리 및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명시(안 제4조제2항)
- 사용료 감액관련 자구 통일(안 제13조제1호 및 제4호)

4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회관을 관리 및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위탁 운영의 철회시 까지에서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 기간인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위탁 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